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01 발의연월일: 2024. 9. 5.

발 의 자: 박홍근·김문수·김남근

염태영·박정현·박 정

이기헌 · 오세희 · 서영교

이용선 · 김남희 · 박주민

이워택 • 황정아 • 김용만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세법」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기획 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 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파산선고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제1조(「관세법」의 개정)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2조(「관세사법」의 개정) 관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3조(「귀속재산처리법」의 개정) 귀속재산처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조(「담배사업법」의 개정) 담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나목을 삭제한다.

- 제5조(「세무사법」의 개정) 세무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 제6조(「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의 개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8조(「한국수출입은행법」의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한국은행법」의 개정)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0조(「한국조폐공사법」의 개정) 한국조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11조(「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 등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것

으로 본다.

관세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 | |
| 영할 수 없다. 다만, 제6호에 | |
|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같은 | |
| 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해 | |
| 당 특허보세구역을 제외한 기 | |
| 존의 다른 특허를 받은 특허보 | |
| 세구역에 한정하여 설치・운영 | |
| 할 수 있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u><삭 제></u> |
| 아니한 자 | |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관세사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 | 제5조(결격사유)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 | |
| 세사가 될 수 없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u><삭 제></u> |
| 아니한 사람 |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귀속재산처리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第9條 左의 各號의 1에 該當하는 | 第9條 |
| 者는 歸屬財産의 買收人이 될 | |
| 수 없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 <u><</u> 삭 제> |
| 아니한 者 | |
| 3. ~ 7. (생 략) | 3. ~ 7. (현행과 같음) |

담배사업법 신 · 구조문대비표

| 개 정 안 |
|---------------------|
| 제11조의2(담배제조업허가의 결 |
| 격사유) |
| |
| |
| 1. (현행과 같음) |
| <u><삭 제></u> |
| |
| 3. ~ 6. (현행과 같음) |
| 제14조(담배판매업 등록의 결격 |
| 사유)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u><삭 제></u> |
| |
| 3. ~ 6. (현행과 같음) |
| 제16조(소매인의 지정) ① (현행 |
| 과 같음) |
| ② |
| |
| |
| |

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생 략)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자 다. ~ 바. (생 략)

2. ~ 4. (생 략)

③ (생략)

| 1 |
|--------------------|
| |
| 가. (현행과 같음) |
| <u><삭 제></u> |
| |
| 다. ~ 바. (현행과 같음) |
| 2. ~ 4. (현행과 같음) |
| ③ (현행과 같음) |

세무사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 제4조(세무사의 결격사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은 제6조에 따른 등록을 | |
| 할 수 없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 | <u><삭 제></u> |
| 되지 아니한 사람 | |
| 4. ~ 10. (생 략) | 4. ~ 10. (현행과 같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 제2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 |
| 없다.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u><</u> 삭 제> |
| 아니한 사람 |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 | 제7조(면허등의 제한) |
| 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
|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 | |
| 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 | |
| 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 |
| 수 있다.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 <u><삭 제></u> |
|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한국수출입은행법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대 | 제40조(임원의 해임 사유) ① |
| 통령은 은행장이 다음 각 호의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재 | |
| 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해 | |
| 임할 수 있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 <u><삭 제></u>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한국은행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
|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 |
| 임할 수 있다. | |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u><</u> 삭 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한국조폐공사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임원의 해임) 공사의 임원 | 제17조(임원의 해임) |
|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임면 | |
| 권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 |
| 있다.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 <u><</u> 삭 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협동조합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
| 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 | |
| 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 | |
| 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 |
| 수 없다. | |
| 1. • 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 <u><삭 제></u> |
| 아니한 사람 | |
| 4. ~ 7. (생 략) | 4. ~ 7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